

관:(600) 상수도사업수익 항:(610) 영업수익 세항:(611) 급수수익 목:(001) 가정용

(단위:천원)

관 · 항 · 세항 · 목	예산액 (A)	전년도예산액 (B)	증 감 (A-B)	산 출 기 초
600 상수도사업수익	10,078,164	13,256,250	△3,178,086	
610 영업수익	9,935,664	9,960,655	△24,991	
611 급수수익	9,686,005	9,686,005	0	
001 가정용	3,480,000	3,480,000	0	
				○ 상수도요금수입 580원X500,000톤X12월 = 3,480,000
002 일반용	3,500,005	3,500,005	0	
				○ 상수도요금수입 1,030원X283,172톤X12월 = 3,500,005
003 전용공업용	2,706,000	2,706,000	0	
				○ 전용공업용수 요금수입 410원X550,000톤X12월 = 2,706,000
612 급수공사수익	213,600	253,100	△39,500	
001 신설공사수입	180,600	180,600	0	
				○ 신설공사수입 700,000원X258전 = 180,600
002 개조공사수입	33,000	72,500	△39,500	
				○ 급수관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수입

관:(600) 상수도사업수익 항:(610) 영업수익 세항:(612) 급수공사수익 목:(002) 개조공사수입

(단위:천원)

관 · 항 · 세항 · 목		예산액 (A)	전년도예산액 (B)	증 감 (A-B)	산 출 기 초
					400,000원X50전 = 20,000
					○ 노후관교체등에 따른 급수공사수입
					130,000원X100전 = 13,000
614	기타영업수익	36,059	21,550	14,509	
001	수수료수입	6,600	6,600	0	
					○ 급수공사 설계수수료
					8,000원X300전 = 2,400
					○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
					7,800원X300전 = 2,340
					○ 급수공사 자재검사 수수료
					6,200원X300전 = 1,860
003	잡수입	29,459	14,950	14,509	
					○ 파손 및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(16,699)
					· 13mm 31,900원X400전 = 12,760
					· 20mm 49,500원X40전 = 1,980
					· 25mm 75,900원X20전 = 1,518
					· 40mm 123,200원X2전 = 246
					· 50mm 195,800원X1전 = 195
					○ 개별검침 계량기 교체대금
					31,900원X400전 = 12,760
620	영업외수익	142,500	3,295,595	△3,153,095	
621	수입이자	70,000	50,000	20,000	

관:(600) 상수도사업수익 항:(620) 영업외수익 세항:(621) 수입이자 목:(001) 일반이자수입

(단위:천원)

관 · 항 · 세항 · 목		예산액 (A)	전년도예산액 (B)	증 감 (A-B)	산 출 기 초
	001 일반이자수입	70,000	50,000	20,000	
					○ 예금이자수입 70,000,000원 = 70,000
	622 타회계전입금수익	62,500	60,500	2,000	
	002 타특별회계전입금	52,500	52,500	0	
					○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3,500,000,000원X0.015 = 52,500
	007 기타전입금	10,000	8,000	2,000	
					○ 물이용부담금 징수보조금 500,000,000원X0.02 = 10,000
	625 기타영업외수익	10,000	3,185,095	△3,175,095	
	001 기본재산임대수입	10,000	10,000	0	
					○ 임대수입(SK,KTF) 10,000,000원 = 10,000

관:(100) 자본적수입 항:(320) 자본잉여금수입 세항:(321) 원인자부담금 목:(001) 원인자부담금

(단위:천원)

관 · 항 · 세항 · 목	예산액 (A)	전년도예산액 (B)	증 감 (A-B)	산 출 기 초
100 자본적수입	1,962,500	1,372,500	590,000	
320 자본잉여금수입	1,962,500	1,372,500	590,000	
321 원인자부담금	1,072,500	1,072,500	0	
001 원인자부담금	1,072,500	1,072,500	0	
				○ 급수공사에 따른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600,000원X100전 = 60,000
				○ 물다량수요자 원인자부담금 750,000원X45,000㎡X0.03톤 = 1,012,500
322 타회계건설보조금	890,000	300,000	590,000	
002 타회계건설보조금	890,000	300,000	590,000	
				○ 상수도시설확장(취수장이전)사업(도비) 294,000,000원 = 294,000
				○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(국,도비) 7,500,000원 = 7,500
				○ 농어촌생활용수개발(구제역매몰지)사업(국,도비) 588,500,000원 = 588,500